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(조례제1542호 1987. 5. 15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